#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39

발의연월일: 2020. 8. 10.

발 의 자:이명수・황보승희・추경호

홍문표·최형두·성일종

권영세 · 김미애 · 조경태

박덕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제주4·3사건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아픔을 간직한 과거사 중의 하나임.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제주도민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 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제주4·3사건이 진상규명,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,

-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- 나.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 여야 하고,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안 제2조의3 신설).
- 다.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·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(안 제2조의4 신설).
- 라. 위원회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 신설).
- 마.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(안 제5조의2 신설).
- 바.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(안 제6조의2 신설).

##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희생자와 유족의 권리)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·3사건의 진상 규명,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,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 다.

제2조의3(국가의 책무)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조의4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·발굴(유해수습, 현장감식 등을 포함한다. 이하 "조사·발굴"이라 한다) 및 신원확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,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자문기구의 설치 등)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, 법의학전문가,

사회·종교지도자,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, 진상규명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
-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조사대상자의 보호)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,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6조의2(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)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희생자와 유족의 권리)
	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·3사건
	의 진상규명, 희생자와 유족에
	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, 기념사
	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
	제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는
	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3(국가의 책무) 국가는 희
	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
	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
	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
	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
	취하여야 하고, 국민화합을 위
	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4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
	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·발굴
	(유해수습, 현장감식 등을 포함
	한다. 이하 "조사·발굴"이라 한
	다) 및 신원확인에 관하여 다
	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의2(자문기구의 설치 등) ①
	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
	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

<u>제4조의2(비밀누설의</u> 금지) (생략)

<신 설>

문기구를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, 법의학전 문가, 사회·종교지도자,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, 진상규명 관련 단체를 대표하 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.
- <u>제4조의3(비밀누설의 금지) (현행</u> 제4조의2와 같음)
- 제5조의2(조사대상자의 보호)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 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,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6조의2(국가기관 등의 협조의

<u><신 설></u>

- 무)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 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 로 수행할 수 있다.